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3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민병덕·신영대·임미애

이기헌・김 윤・김남희

김병기 · 황명선 · 이해민

김재원 • 한창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.

즉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별보 및 현수막의 게시,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,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

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).

- 나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7조제1항).
- 다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·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9조제1항,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2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본문 중 "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(地域區國會議員選 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, 地域區市・道議員選舉 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 · 도의원후보자 명단을, 지역구자치구 · 시 · 군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・시・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 하며,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)"을 "그 밖의 홍보에 필 요한 사항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비 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, 대 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 다"를 "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 고.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며. 같 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및 단서 중 "제2항"을 각각 "제3항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第1項"을 "제1항 및 제2 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第3項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·성명·학력·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(제150조에 따라 투표용 지에 인쇄할 정당의 게재순위를 말한다) 및 정강 정책 그 밖의 홍보 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작성·첩부하되 그 수량은 제1항에 따른다.

제65조제13항 전단 중 "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"를 "제64조제 3항 후단부터 제9항까지"로 한다.

제66조제8항 전단 중 "제64조제3항·제8항"을 "제64조제4항·제9항"으로 한다.

제67조제1항 중 "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"을 "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79조제1항 중 "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 보자는 제외한다"를 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

후보자와 선거사무소마다 각 1대 · 각 1조

3의2.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

후보자마다 1대・1조

제255조제2항제1호의3 중 "제64조제1항·제9항"을 "제64조제1항·제2 항·제10항"으로 한다.

제256조제5항제5호 중 "제64조제8항(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을 "제64조제9항(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선거벽보) ① 選擧運動에	제64조(선거벽보) ①
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	
의 寫眞(候補者만의 寫眞을 말	
한다) · 姓名 · 記號(제150조에	
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	
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	
한다. 이하 같다)・政黨推薦候	
補者의 所屬政黨名(無所屬候補	
者는 "無所屬"이라 표시한다).	
경력[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	
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	
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	
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. 이 경	
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	
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	
교명(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	
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)을	
기재하고, 正規學歷에 준하는	
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	
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	
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	
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	
재하여야 하며, 정규학력의 최	

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 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 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. 이하 같다] · 政見 및 所 屬政黨의 政綱・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(地域區國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 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, 地域 區市・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 · 도의원후보자 명 단을, 지역구자치구 · 시 · 군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 치구・시・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, 候補者외의 者의 人 物寫眞을 제외한다)을 게재하 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 에 1매,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 0명에 1매,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 · 첩부한다. 다만, 인구밀 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 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.

그 밖의 홍보에 필요
한 사항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 보자를 제외하며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(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)까지,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

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 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 자 모두의 사진 · 성명 · 학력 · 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(제150 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의 게재순위를 말한다) 및 정강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 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작성・ 첩부하되 그 수량은 제1항에 따른다. ③ 제1항 및 제2항---------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-----

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	구	•
시 • 군선거관리위원회에	제	출
하고, 해당 구·시·군선거	관	리
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	선	거
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(대	통	령
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	역	의
경우는 3일)까지 첩부한다		이
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	제	출
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	벽	보
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(투	丑
구를 단위로 한다)을 지정	하	여
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	<u></u>	로
신고하여야 하고, 선거벽	보	를
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	신	고
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	구	•
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	1	지
역을 지정한다.		

- ③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는 제2항에 따라 候補者가 작 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 벽보의 數量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 數量을 加算할 수 있다.
- <u>④</u> 후보자가 <u>제2항</u>에 따른 제

,

<u>4</u>
<u>제3항</u>
⑤제3항

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와 規格을 넘거 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 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 하지 아니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 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.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 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 열방법 · 색상 · 규격 등을 변경 할 수 없다. 다만, 후보자는 선 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 명 · 기호 · 소속 정당명과 경력 · 학력 · 학위 · 상벌(이하 "경 력등"이라 한다)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 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 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 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 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. ⑥ (생략)

⑥ 제3항
<u>제3항</u> -
(전체 게G하네 가 이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<u>7</u>	管	瞎選	[學]	區選	學句	管理	图委	員	會
는	第1	<u>項</u> 의] .	선거	벽.	보여		다	른
候裤	f者,	그:	의	配偶	者	또	는	直	系
尊•	卑厚	憂이	나	兄弟	身姉	妹	의	私	生
活め	대	한	사	실을	적	시	하ㅇ	4	誹
謗す	누는	내용	<u>응</u> 이	0]	法	에	위	반	된
다고	1 인	정칭	하는	때 (에는	= (이틭	=	告
發す	· 고	公台	불하	여이	: हं	ŀ다			

- ⑧ 선거벽보를 印刷하는 印刷 業者는 <u>第3項</u>의 선거벽보의 數 量외에는 이를 印刷하여 누구 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.
- ⑨ 候補者는 管轄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 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.

⑩ (생 략)

①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貼付場所가 있는 土地・建物 그 밖의 시설 물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선 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

<u>(8)</u>
<u>제1항 및 제2항</u>
9
<u>ম</u>]4ৡ
<u> </u>
<u>제4항</u> -
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
① <u>제1항 및 제2항</u>

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① (생략)

- 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② (생략)
 - ③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 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 벽보"는 "선거공보"로, "첩부하 지 아니할 지역"은 "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"으로, "첩 부"는 "발송"으로, "규격을 넘 거나 미달하는"은 "규격을 넘 건나 미달하는"은 "규격을 넘 는"으로, "경력·학력·학위· 상벌(이하 "경력등"이라 한다)" 은 "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 개자료"로 본다.

① (생략)

- 제66조(선거공약서) ① ~ ⑦ (생 략)
 - ⑧ 제64조제3항·제8항 및 제65조제4항(단서는 제외한다)은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

⑥ (현행 제12항과 같음)	
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⑫	(현
행과 같음)	
③ 제64조제3항 후단부터	제9
<u>항까지</u>	
<u>.</u>	
⑭ (현행과 같음)	
제66조(선거공약서) ① ~	7
(현행과 같음)	
⑧ 제64조제4항・제9항	

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벽 보" 또는 "책자형 선거공보"는 "선거공약서"로, "작성하여 보 관 또는 제출할"은 "작성할"로, "점자형 선거공보"는 "점자형 선거공약서"로 보며, 점자형 선 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.

⑨ (생략)

제67조(현수막) ① 후보자(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 며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 천정당을 말한다)는 선거운동 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 •면•동 수의 2배 이내의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79조(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|제79조(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 담) ①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 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선거운동기 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 책이나 후보자의 정견, 그 밖에

·	
⑨ (현행과 같음)	
제67조(현수막) ①대	통령
	บวไ
선거에 있어서 정당주천후,	보사
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	
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	및
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기	<u>및</u> 거의
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	<u>및</u> 거의
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기	<u>및</u> 거의
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기	<u>및</u> 거의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담) ① -----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지

- ② (생략)
- ③ 공개장소에서의 演說·對談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.

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(생 략) <u><신 설</u>>

④ ~ ⑫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

② (현행과 같음)
③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
후보자와 선거사무소마다 각
<u>1대·각 1조</u>
3. (현행과 같음)
3의2.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
<u>거</u>
후보자마다 1대·1조
④ ~ ⑫ (현행과 같음)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① (현
행과 같음)
2

役	또는	400萬원	이하의	罰金
에	處むに	7.		

- 1. · 1의2. (생략)
- 1의3. 제64조제1항·제9항, 제6 5조제1항·제2항, 제66조제1 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·선거공보 또는 선 거공약서를 選擧運動을 위하 여 작성·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
- 2. ~ 8. (생략)
- ③ ~ ⑥ (생 략)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 - ~ ④ (생 략)
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 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 - 1. ~ 4. (생략)
 - 5. 제64조제8항(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・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
 - 6. ~ 12. (생략)

<u>.</u>
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64조제1항·제2항·제1
0항
<u>0%</u>
2. ~ 8. (현행과 같음)
, = 0 , = = /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~ ④ (현행과 같음)
⑤
· 1 / 서 /처 체 리 기 이 \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64조제9항(제65조제13항
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
는 경우를 포함한다)

6. ~ 12. (현행과 같음)